

전라북도의산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전라북도의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

2019. 5. 1.



## 전라북도의산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기준

#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기준은 전라북도의산교육지원청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라 함)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교육행정직렬 등” 이란 별표 1의 직렬을 말한다.
2. “시설관리직렬 등” 이란 별표 2의 직렬을 말한다.

제4조(일반 원칙) ① 교육장은 6급이하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한다.

1.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·훈련·근무경력·전문성 및 적성 등
  2. 해당 공무원의 관내 기관(학교) 선택 전보희망서
- ② 시설관리직 등 공무원은 해당공무원의 근무희망기관, 생활근거지, 자격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.

제5조(장애공무원의 보직) 장애가 있는 공무원의 생활근거지, 신체적 조건, 특기,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.

## 제2장 전보

제6조(전보 대상) ① 관내 전보는 동일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② “시설관리직 등”은 동일직렬로서 동일기관(교육지원청 포함)에 다음의 기간이상 근무자는 다른 기관에 전보하여야 한다. 다만, 3개월 이내 근무 연한이 도래하는 자를 포함한다.

1. 기술직군(시설관리, 운전) - 5년 이상

2. 관리운영직군(사무운영) - 3년 이상

③ 전보희망자 및 전보대상자는 전보희망서에 근무희망 지역과 기관을 표시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관내 전보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내 기관(학교)선택 전보희망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.

1. 폐교 및 학급감축, 정원 감축(과원 조정 포함)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

2. 인사고충상담 및 조사서 제출자 등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전보하기로 결정된 자

제7조(인사 고충) 장애인공무원 또는 그 밖의 인사 고충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사 고충 상담 및 조사서를 제출한다.

제8조(전보 시기) 정기 전보는 정기 인사 시기(1월, 7월)에 실시하고,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시 전보할 수 있다.

제9조(전보 방법) ① 전보는 근무희망기관, 근무경력, 근무 기관 설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.

② 전보는 관내(감축, 순환, 일반)전보와 관내 전입자 전보로 구분하고, 우선

순위는 관내 감축전보, 관내 순환전보, 관내 일반전보, 관내 전입자전보의 순환, 감축, 일반순으로 한다.

③ 전보는 전보서열부의 순위에 의하여 전보서열부 작성은 「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」 제22조를 준용한다.

④ 7급 행정실장의 경우 인사형편을 고려하여 행정실장에 연속 보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정년퇴직일 기준, 퇴직잔여기간이 3년 이내인 교육행정직 6급 공무원 및 신규임용자는 교육행정직 3명 이상인 기관(학교)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0조(휴직자의 복직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1조에 따라 결원이 보충된 경우의 복직자는 정기인사 시 전보희망서 등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당사자의 전보희망서에 기재된 본인의 전보 순위 평정점을 참고하여 본인의 실적에 따라 관내 순환 또는 관내 일반 전보로 분류하여 배치한다.

제11조(교육행정직렬 기관 및 학교 선택 전보희망제) ① 교육장은 학교급별,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 인사발령 1개월 전까지 각급 학교에 통보한다.

② 관내 전보는 전보서열부, 교육행정직 전보희망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내기관(학교)선택 전보희망서로 하고, 교육지원청 근무 6급 이하 교육행정직은 전보서열부 평정점에 근무 월당 1점을 가산하여 적용한다.

③ 교육장은 전보서열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관내직급별 결원예정기관(학교) 명부를 도교육청 인사발령 후 공개한다.

④ 도교육청 인사발령 후 전보대상자는 관내기관(학교)선택 전보희망서에 단설유치원, 초·중 각 7개교, 교육지원청 3개과를 선호 기관(학교)순으로 작성 제출한다.

⑤ 관내 전보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전보서열부 순위에 따라 전보대상자의 제11조 제2항에 따른 전보희망서의 학교급별 및 관내기관(학교)선택 전보희망서의 전보희망기관(학교) 우선 순위에 따라 배치한다. 다만,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의 부서 간 이동은 전보서열부에 우선하여 배치할 수 있다.
2. 전보서열부 후 순위로 희망기관에 배치되지 못할 경우 임의 배치한다.
3. 관내기관(학교)선택 전보희망서 미 제출자 또는 전보 희망자가 없는 기관 (학교)은 임의 배치한다.
4. 다른 직급 결원에 따라 발생된 보직을 보충해야 할 경우, 관내기관(학교) 선택 전보희망서와 관내 전보서열부에 우선하여 임의배치 할 수 있다.
5. 결원예정기관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전보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관내기관(학교)선택 전보희망서와 관내 전보서열부에 우선하여 배치 할 수 있다.

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심사 · 의결에 따라 전보할 수 있다.

1. 인사고충 상담 및 조사서 제출자(장애, 질병)
2. 삭제
3. 교육지원청 희망자가 없는 경우 관내기관(학교)선택 전보희망서와 관내 전보서열부에 우선하여 배치하려고 하는 자
4. 업무상 고충, 조직부적응 등 민원발생 자에 대하여 관내 기관(학교)선택 전보희망서와 관내 전보서열부에 우선하여 배치하려고 하는 자

⑦ 교육장은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관내 전보대상자를 배치하고 관내전보서열부 및 최종 배치 결과를 공개한다.

⑧ 민원발생자 등 제11조 제6항 제4호 요인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 · 의결에 따라 전보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당해 직급 하위 10% 이내로 평정한다.

제12조(기타)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  
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분 부터  
시행한다.

제2조(민원발생자 등 근무평정 적용 특례) 제9조 제8항에 따른 적용은  
2017년 1월 1일자 정기인사 대상자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6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분 부터  
시행한다.

제2조(전보제한에 대한 경과조치) 제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 
2016년 1월 1일 이전에 보직된 직위에서의 전보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  
을 따른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7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분 부터  
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분 부터  
시행한다.

(별지 1호 서식)

## 관내 기관(학교)선택 전보희망서

작성자 : 소속

직급

성명

(서명)

생활근거지(      시      구      동)

☎(자택      , 휴대전화      )

학교 급별	전보 희망 기관(해당란에 기관명을 정확히 기재)						비고
희망기관①	희망기관②	희망기관③	희망기관④	희망기관⑤	희망기관⑥	희망기관⑦	
유							
초							
중							
기관							

### ※ 기타사항

- 정해진 기한까지 미제출 시 임의 배정함.
- 의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(정보마당/인사정보/일반직인사)에 공개된 관내 전보서열부, 학교급별 · 직급별 결원예정현황을 참조하여 단설유치원, 초·중학교 각 7개교, 교육지원청 3개과를 작성하시기 바람.
-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과 다르게 배치 할 수 있음.

(별지 2호 서식)

2019. 7 .1.자 학교(기관)별 직급별 결원 예정현황

(별지 제3호 서식)

## 인사고충 상담 및 조사서

### 1. 대상 공무원 인적사항

소 속	직 급	성 명	현부서임용일	생활근거지

### 2. 인사고충 내용 및 조사결과

구 분	내 역 (요 지)	비 고
○ 인사고충		
- 제 목		
- 내 용(요지)		
○ 상담 또는 조사결과		
○ 검토 및 처리의견		
○ 관련자료		

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. .

학교(부서)장

(직/사인)

## ◇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◇

### ■ 개정이유

- 현행 인사관리기준은 기관 형편과 개인 특성을 고려한 배치가 어렵고, 교육지원청(격무기관) 근무자를 배려할 수 없어 교육지원청 근무자의 사기저하 및 근무기피 현상 발생
- 익산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으로 효율적이며 공정한 보직관리를 추진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, 삶의 질 향상 및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축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기준 조항을 개정, 신설, 삭제 또는 미비점을 보완

### ■ 주요내용

- 가.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조항 적용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)
  - 인사관리기준 제6조 : 전보대상 필수보직기간 2년으로 연장
- 나. 7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순환근무를 위한 내용 신설
  - 인사관리기준 제9조: 7급 행정실장의 경우 연속 보직 제한을 통해 순환 배치 가능성 제고
- 다. 교육지원청 근무자의 원하는 기관 이동 기회 보장 및 적재적소 배치 곤란 사항 보완
  - 인사관리기준 제11조 2항: 전보시 가산점 월1점 상향 조정을 통해 격무기관 근무자와 일반 직원과의 형평성 제고
  - 인사관리기준 제11조 5항: 기관의 형편상 필요한 경우 관내 기관(학교) 전보희망서와 관내 전보서열부에 우선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실효성 확보